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22 선고 2019나8224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22 선고 2019나8224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9. 8. 21 선고 2018가단19110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연

담당변호사 강주원

피고,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동

변론 종결 2020. 8. 20

판결선 고 2020. 10. 22

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. 8. 21. 선고 2018가단1911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33,59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,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적법성

피고는,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2항은 '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'고규정하고 있는데,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2항이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 및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최고한 이행 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므로, 위 규정은 위 조항의 모든 해제사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성질상 상당한 이행 기한 내에 피고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.

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8. 1.경부터 피고에게 하부세차장비의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약 3개월이 지난 2018. 4. 20.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레미콘 타설 완료일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레미콘 타설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중도금의 지급만을 요구한 점,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점, 피고의 계속된 이행지체로 인해 원고로서는 세차장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거나 이행 기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, 원고의 해제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된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8. 4. 20.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재성판사 김범준판사 이슬아